

안양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

제정	1973.	7.	1	규칙	제 7호
개정	1982.	6.	9	규칙	제 238호
개정	1988.	12.	20	규칙	제 492호
개정	1989.	4.	29	규칙	제 517호
전면개정	1993.	8.	6	규칙	제 800호
개정	1998.	5.	18	규칙	제 991호
개정	1999.	1.	1	규칙	제1017호
개정	1999.	6.	1	규칙	제1027호
개정	2002.	6.	10	규칙	제1122호(제명개정)
개정	2003.	4.	15	규칙	제1142호
개정	2005.	3.	29	규칙	제1183호(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)
전부개정	2015.	2.	5	규칙	제1413호(제명개정)
일부개정	2017.	6.	15	규칙	제1477호(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)
일부개정	2021.	12.	1	규칙	제1603호(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규칙 일괄개정 규칙)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24조에 따라 안양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1. 12. 1>

제2조(권한대행) ① 안양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시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.

1. 궐위된 경우
 2.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
 3.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
- ② 시장이 그 직을 가지고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시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할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실·국장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. <개정 2017. 6. 15>

제3조(법정대리) ① 시장이 출장·휴가 등 일시적 사유(이하 “사고”라 한다)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시장,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실·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. <개정 2017. 6. 15>

② 부시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실·국의 순위에 따른 실·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. <개정 2017. 6. 15>

- ③ 실·국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실·국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. <개정 2017. 6. 15>
- ④ 구청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.
- ⑤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 또는 차 하위 직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.
- ⑥ 안양시 본청, 직속기관, 사업소와 구의 실장·과장·담당관(5급 사업소장을 포함한다)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주사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.
- ⑦ 동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주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.

제4조(지정대리) 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.

② 담당주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장·과장·담당관 및 동장(5급 사업소장을 포함한다)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,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적격자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리의 지정은 별지 서식으로 하여야 한다.

제5조(책임)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.

부칙 <2015. 2. 5 규칙 제1413호 전부개정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7. 6. 15 규칙 제1477호,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
조례 시행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부터 ⑪ 까지 생략

⑫ 「안양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 중 “국장”을 “실·국장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국장”을 “실·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직제상 국의”를 “직제상 실·국의”로 하며, “국장”을 “실·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국장”을 “실·국장”으로 하며, “해당 국”을 “해당 실·국”으로 한다.

⑬ 부터 ⑮ 까지 생략

부칙 <2021. 12. 1 규칙 제1603호,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
반영을 위한 안양시 규칙 일괄개정 규칙>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